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7. 23.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의안 번호	제95호
----------	------

제출연월일 : 2021. 7. 2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논산시를 상징하는 심별마크, 브랜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시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안 제3조)

- 시를 상징하는 심별마크, 브랜드 슬로건, 나무 등을 규정 함.

나. 상징물의 관리(안 제5조)

-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함.

다.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안 제6조)

- 상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2021. 6. 14.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2021. 6. 11.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2021. 6. 14. (대상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8. (20일)
 - 나) 예고결과 : 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엠블럼, 캐릭터, 나무, 꽃, 새, 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Symbol Mark):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별표 2
3. 엠블럼(Emblem): 별표 3
4. 캐릭터(Character): 별표 4
5. 나무, 꽃, 새: 별표 5
6. 시기(市旗)·휘장(徽章)·철인(鐵印)

② 제1항제6호 시기·휘장·철인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승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행사 등에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농업슬로건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 등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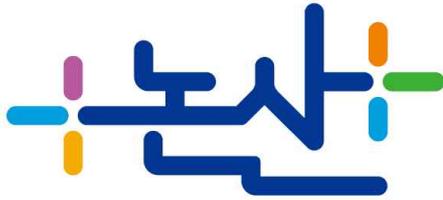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전 략 사 업 실 장	허	원
	도시경관디자인팀장	문	태 훈
	담 당 자	김 영 덕 (746-6252)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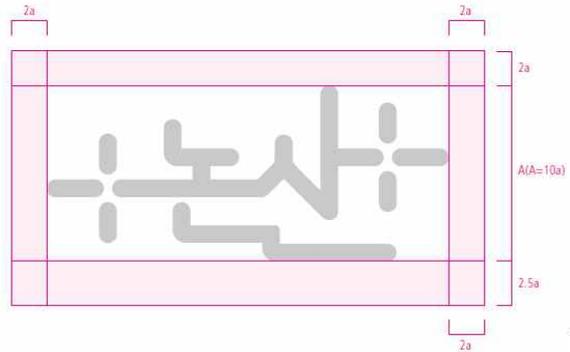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가. 기본형



나. 공간규정



2. 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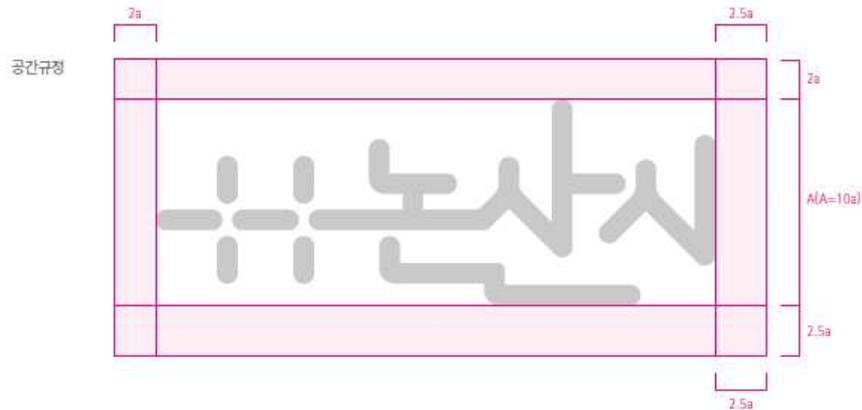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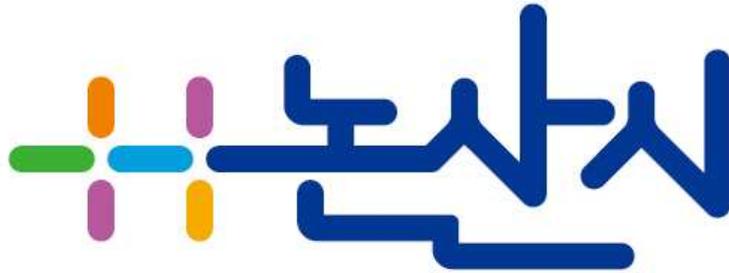
“더하고, 연결하고, 이어주는 거점 도시 논산”

- 논산시의 한글 모음인 ‘ㄴ’과 ‘ㅅ’에 플러스 기호(+)를 결합하여 다양한 사람과 가치가 만나고 이어지는 ‘거점 도시’ 논산을 표현함.
- 논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모티프는 논산의 무한한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너와 나, 문화와 산업, 자연과 도시, 과거와 미래 등 논산을 연결하는 모든 매개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 한글형 워드마크로 가독이 쉽고, 오래 기억되며, 누구나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로 디자인 하였으며, 플러스 기호의 유닛은 논산의 중요한 가치인 ‘사람’을 형상화 한 것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밝게 빛나는 희망찬 논산을 나타낸다.

3. 심벌마크 활용

기본형에 ‘시’를 더한 디자인으로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활용형은 논산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논산브랜드는 직원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논산시의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함.



영문

NONSAN CITY



한문

論山市



4. 색 상

전용색상은 논산시의 모든 매체 색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확한 색상 이미지를 결정 지어주는 요소이므로 지정된 색상을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용색상은 주색(MainColor)과 보조색(Sub Color)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산시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전용색상의 사용은 4원색(CMYK)을 원칙으로 하며, 표현매체에 따라 별색 및 특수인쇄를 사용 할 수 있다.

Main Color



Sub Color



Metallic Color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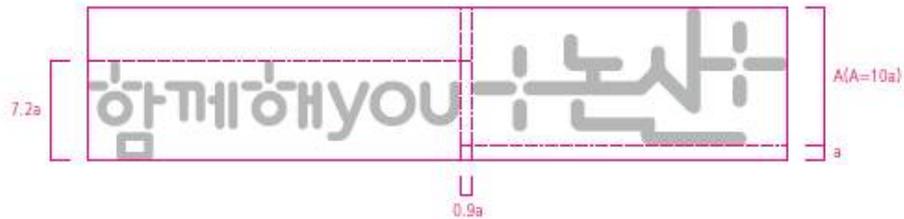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메인 슬로건

논산시의 비전인 동고동락을 친근한 언어로 표현하였다.

당신(you)과 함께 해서 즐겁고, 함께해서 행복한 논산 ‘-해유’ 라는 논산지역의 방언으로 논산시의 풍취를 전달하며 친근한 구어체로 밝고 흥미로운 이미지를 준다.

좌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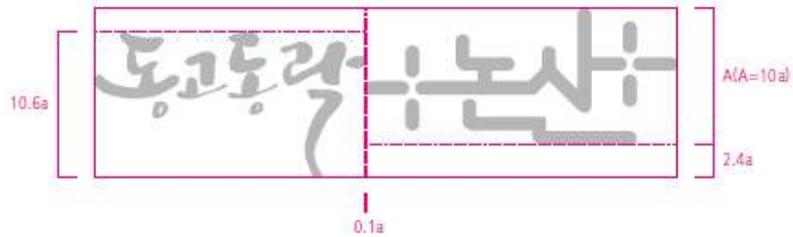
상하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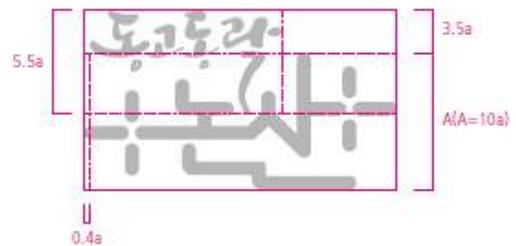
2. 보건복지 슬로건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논산시의 핵심가치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 즐겁고 더불어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표현한다.

좌우조합



상하조합



3. 서브 슬로건

가. 농업 슬로건

논산의 딸기, 논산의 청춘, 논산의 푸른 에너지를 흥미롭게 표현하며 감성적이고 역동적인 논산을 상징한다.



새콤달콤 논산

나. 관광/축제 슬로건

논산의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포괄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며 재미와 감동 그이상의 매력을 전달한다.



상상이상 논산

다. 교육/문화 슬로건

논산의 비전인 동고동락을 연계하여 봄날의 꽃과 청춘의 꽃을 동일시하고 사람이 중심인 논산의 가치를 전달한다.



사람꽃피다 논산

[별표 3]

엠블럼(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엠블럼

엠블럼은 논산시의 가치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type A



type B



Negative



Nonsan Blue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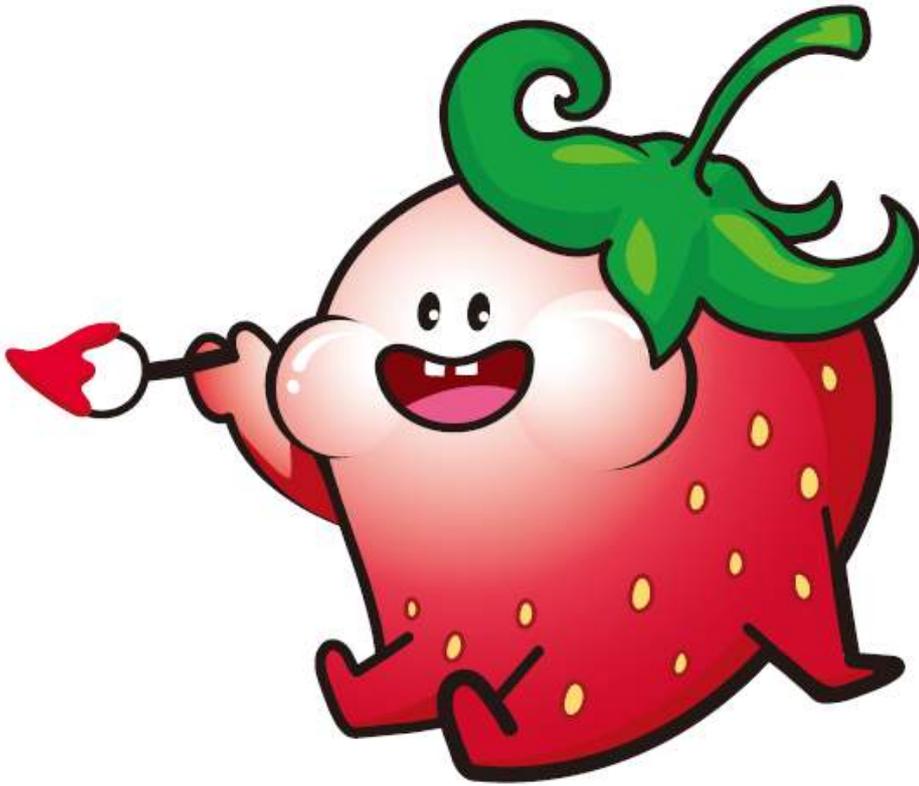


Silver

[별표 4]

캐릭터(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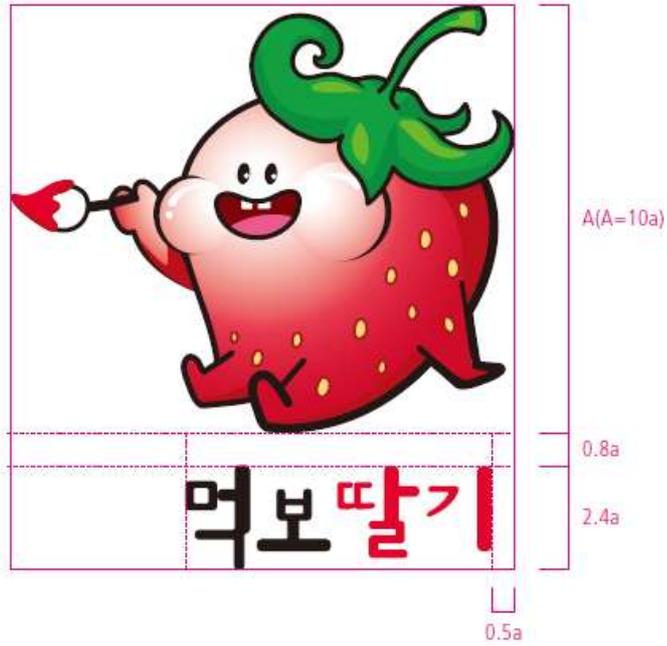


먹보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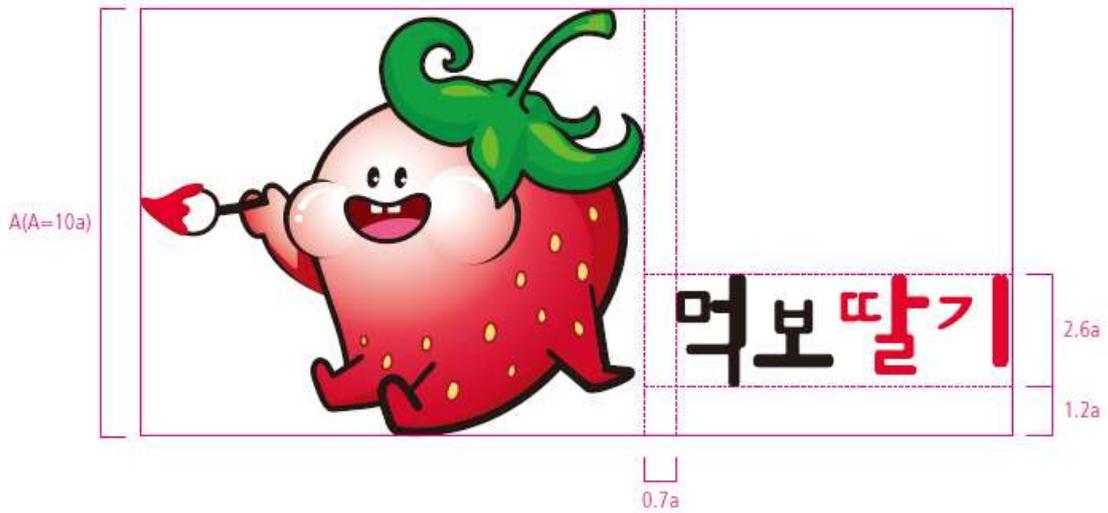
논산 딸기가 익을 때마다 예쁜 색을 칠하며 더욱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가꾸는 장난꾸러기 먹보딸기. 새콤달콤한 논산 딸기를 너무 좋아해 항상 먹으면서 다닌다. 익을수록 꼭지가 뒤집히는 논산딸기를 모티브로 동그랗게 말린 초록꼭지를 포인트로 표현하여 맛과 향, 당도가 높은 논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딸기의 레드와 핑크컬러를 메인으로 적용,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형태로 친숙함을 표현하였다. 양중맞은 딸기씨와 익살스러움이 느껴지는 귀여운 논산의 캐릭터이다.

2. 기본형(시그니처)

상하조합



좌우조합



3. 색상

Red Gradation



<p>NONSAN CHARACTER Red 1 CMYK : C1 M100 Y81 K0 RGB : R229 G0 B44</p>	<p>NONSAN CHARACTER Red 2 CMYK : C20 M100 Y98 K10 RGB : R188 G18 B28</p>	<p>NONSAN CHARACTER Brown 1 CMYK : C34 M100 Y100 K12 RGB : R165 G26 B31</p>	<p>NONSAN CHARACTER Brown 2 CMYK : C31 M100 Y100 K43 RGB : R126 G4 B11</p>
<p>NONSAN CHARACTER Green 1 CMYK : C60 M0 Y100 K0 RGB : R111 G186 B44</p>	<p>NONSAN CHARACTER Green 2 CMYK : C82 M6 Y97 K0 RGB : R0 G161 B65</p>	<p>NONSAN CHARACTER Green 3 CMYK : C85 M18 Y98 K4 RGB : R0 G143 B62</p>	
<p>NONSAN CHARACTER Yellow CMYK : C0 M17 Y62 K0 RGB : R253 G218 B114</p>	<p>NONSAN CHARACTER Pink CMYK : C0 M77 Y14 K0 RGB : R233 G91 B141</p>	<p>NONSAN CHARACTER Black CMYK : C0 M0 Y0 K100 RGB : R35 G24 B21</p>	

4. 응용형 A~C

type A



인사

type B



거절

type C



관찰

5. 응용형 D~F

type D



만족

type E



사랑

type F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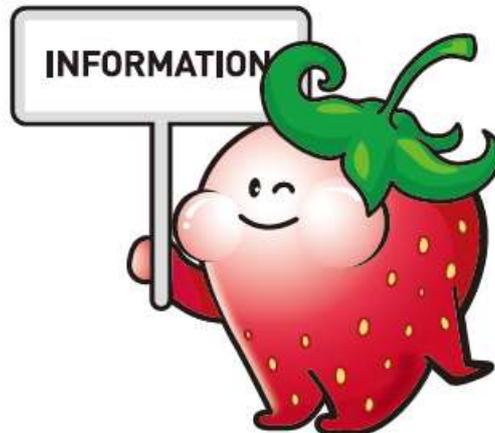
6. 응용형 G~I

type G



독서

type H



안내

type I



환영

7. 서브 캐릭터

딸기요정

둥글고 단단한 논산딸기를 닮은 개구쟁이 딸기요정. 달콤함과 사랑을 전해주는 딸기요정으로 레드와 그린컬러를 통해 딸기의 신선함을 전달한다. 논산딸기의 맛과 향처럼 생기발랄한 이미지로 친숙함과 신뢰성을 강조한다.



딸기몬

딸기행성에서 맛있는 논산딸기를 연구하려는 오동동한 선홍빛의 딸기몬. 다양한 표정과 특유의 발랄함이 주 특징이다. 추위와 병충해에 강한 논산딸기처럼 씩씩한 모습과 논산딸기만의 말린 꼭지를 재밌게 표현하였다.



딸기꿀벌

논산딸기를 좋아해서 늘 따라다니는 딸기꿀벌. 달콤함과 세콤함을 전해주는 딸기모양을 하고 있는 귀여운 딸기꿀벌로 잘 익은 딸기의 신선하고 달콤함이 나타나는 레드컬러와 상큼하고 특유의 귀여움이 묻어나는 옐로우 컬러를 통해 논산딸기의 향기와 건강함을 전달해주는 캐릭터이다.



[별표 5]

시 상징 나무, 꽃, 새(제3조제1항제5호 관련)

	<p>□ 나 무 : 느티나무</p> <p>녹음수(錄陰樹)로 재목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거목으로 “시의 웅장함” 을 상징</p>
	<p>□ 꽃 : 개나리</p> <p>봄소식을 전해주는 꽃으로 “새날을 연다” 는 미래에 대한 시민의 희망을 상징</p>
	<p>□ 새 : 원 앙</p> <p>암수가 늘 함께 다니는 화목한 새로 “정답고 화합하는 논산 시민상” 을 상징</p>

[별표 6]

상징물 관리부서(제5조제4항 관련)

상징물 명	관리부서	비 고
심별마크	전략사업실	
브랜드 슬로건	전략사업실	
엠블럼	전략사업실	
캐릭터	전략사업실	
시의 나무, 꽃, 새	전략사업실	
시기, 휘장, 철인	자치행정과	
그 밖에 상표, 개별 브랜드 등	소관 상징물 사용 및 관리부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p><덧붙인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 추계 결과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추계의 전제 :

○ 해당 없음

나. 추계 결과 :

○ 해당 없음

3. 작성자

전략사업실장 허 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참고2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기관명	제 정 내 용	제정일자 (최근개정)	비 고
경기도 수원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12.29. (2019.01.10.)	수원시 상징물 조례
경기도 성남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02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 자치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4.10 (2021.04.15.)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5.06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10.20. (2015.02.16.)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